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522호 2020. 6. 22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폐지 고시 ----- 5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
일부개정규칙(안) ----- 1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일부개정  
규칙(안) ----- 18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94호 도로구역(광역시도 3호선, 광역시도 50호선) 결정 사업인정  
(의제)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----- 24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-100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제1항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6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청서로 31 외 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·폐지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램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06.2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0-06-22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-40	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1 (청라동)	20101111	청라대로 서쪽에 위치	
2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8-6	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 29 (오류동)	20090922	옛날 자연무락인 대촌이라는 명칭을 따 명명	
3	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-2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51번길 19 (신현동)	20090922	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	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17번길 52 (마전동)	20081231	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61, 960-5, 962-	인천광역시 서구 월당대로608번안길 9-2 (당하동)	20081231	월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-17	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9-7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7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-27	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2번길 17-9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8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6-21	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2번길 18-16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9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-17	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10-12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0-06-22

원번	도로명주소	폐지 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6-1 (가정동)	건물 멸실	20090706	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-101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폐지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제1항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6조의5, 제21조에 따라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6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시일 : 2020. 6. 22.
2. 고시방법 : 홈페이지 및 구보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(붙임 참조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(☎032-560-48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현황도

연번	도로 위계	도로명	행정 구역	도 로 구 간						도로구간 변경 사유
				시 점	종 점	기초구간	길이(m)	폭(m)	기초간격(m)	
1	길	호두산로58번길	검암경서동	경서동 350-76	경서동 350-147	6-1 → 6-21	202	4	20	도로 없음 (1차 종속구간)
2	로	청중로	청라3동	청라동 103-12	청라동 103-9	136-1 → 136-15	153	2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3	길	청라한내로174번길	청라3동	청라동 62-36	청라동 8-138	15-1 → 15-21	103	10	1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4	길	청라한내로162번길	청라3동	청라동 62-36	청라동 85-5	16-1 → 16-15	72	10	1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5	로	청라한내로	청라3동	청라동 76-7	청라동 46-51	167-1 → 167-11	116	2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6	로	청라한내로	청라3동	청라동 76-7	청라동 71-48	168-1 → 168-11	118	2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7	로	청라커널로	청라2동	청라동 149-4	청라동 145-19	323-1 → 323-15	140	2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8	로	청라커널로	청라3동	청라동 105-153	청라동 105-148	63-1 → 63-15	145	2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9	길	청라에메랄드로149번길	청라1동	청라동 121-24	청라동 123-15	20-1 → 20-9	100	1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10	길	첨단동로192번길	청라3동	청라동 1-764	청라동 1-773	28-1 → 28-27	268	10	20	도로 없음 (1차 종속구간)
11	길	첨단동로164번길	청라3동	청라동 1-812	청라동 1-804	27-1 → 27-27	270	20	20	도로 없음 (1차 종속구간)
12	로	첨단동로	청라3동	청라동 7-18	청라동 102-8	92-1 → 92-19	214	5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13	로	첨단동로	청라3동	청라동 7-18	청라동 102-15	44-1 → 44-47	468	50	20	보행자도로 (1차 종속구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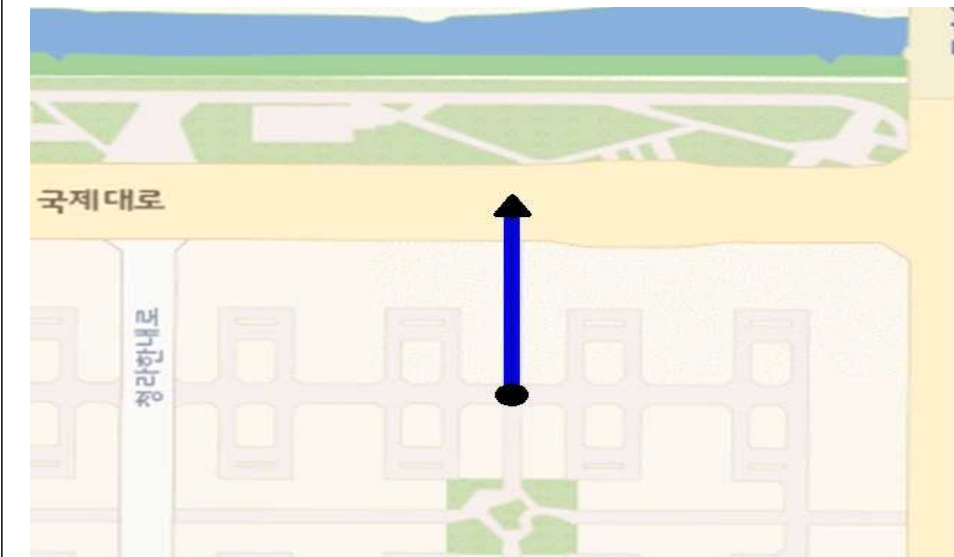
※ 현황도면



호두산로58번길



청중로



청라한내로174번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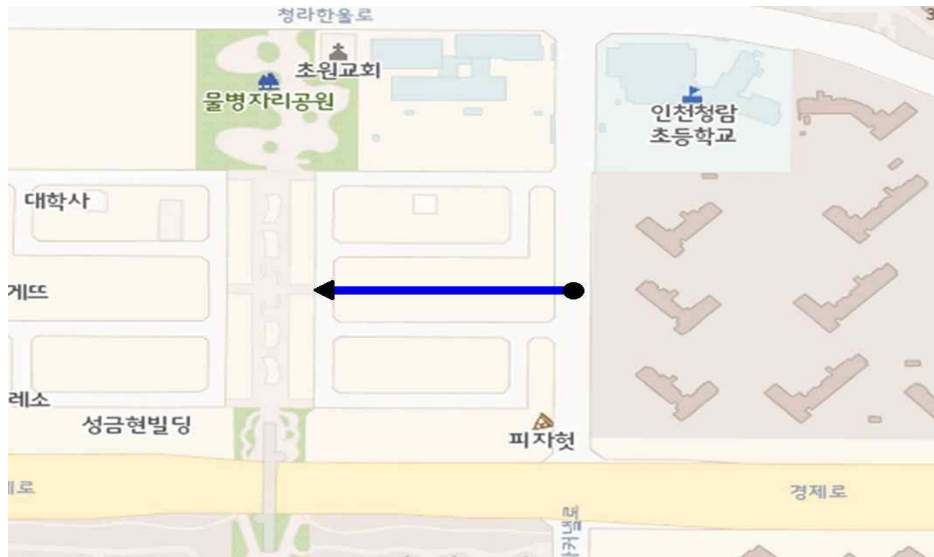
청라한내로162번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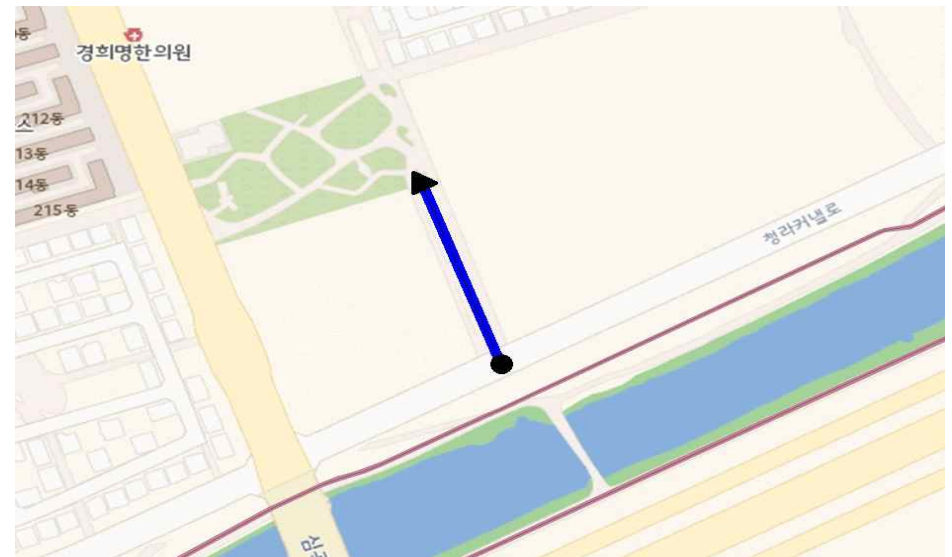
청라한내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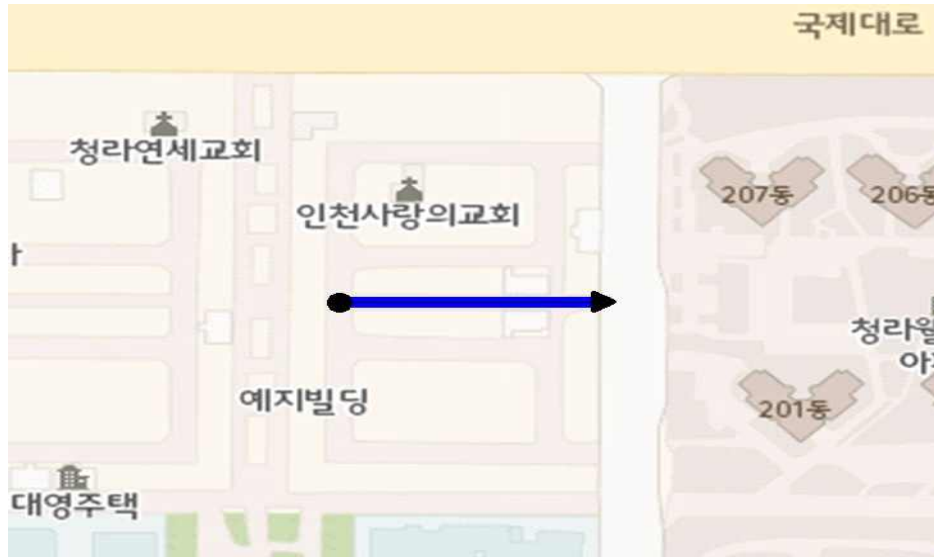
청라한내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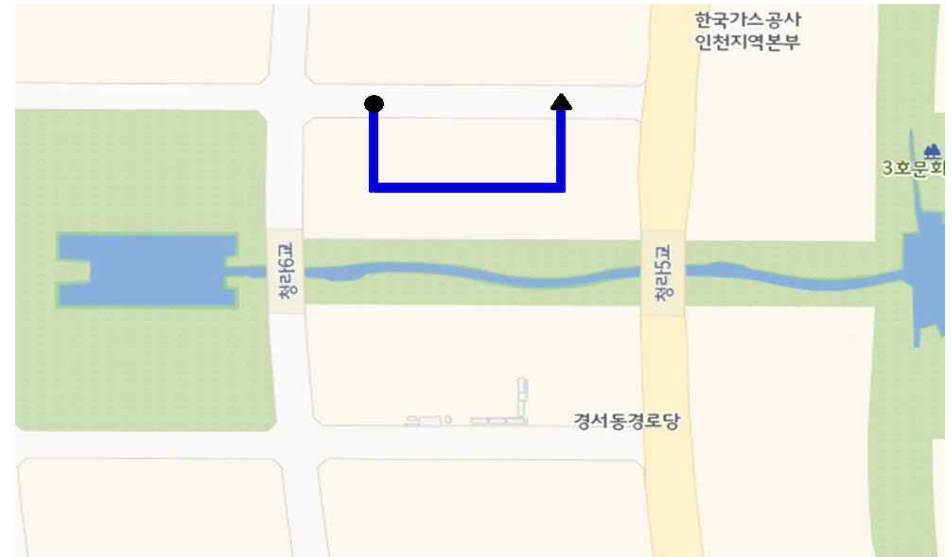
청라커널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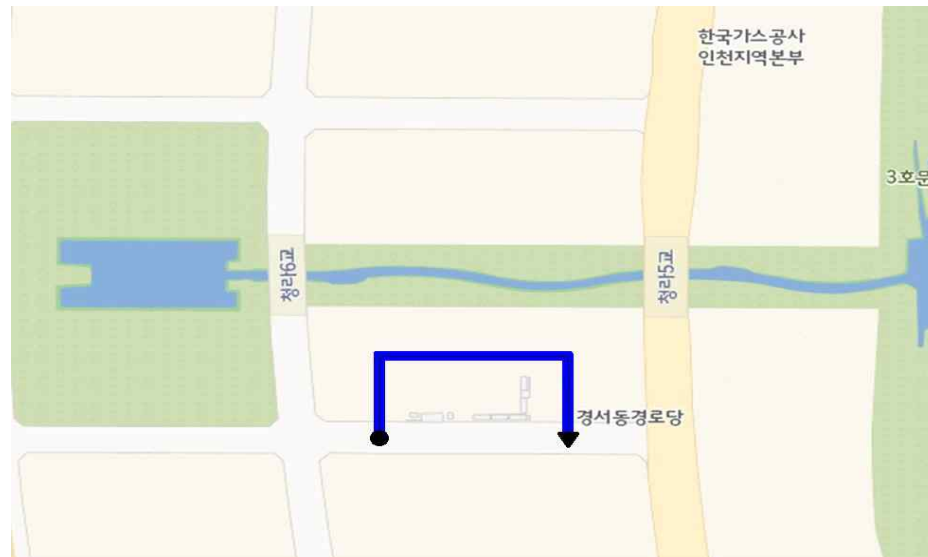
청라커널로



청라에메랄드로149번길



첨단동로192번길



첨단동로164번길



첨단동로



첨단동로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- 98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「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. 6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근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용어를 구체화하여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(제5조, 제6조, 제7조)
- 종전에 상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문구를 개선하여 삭제하도록 함(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 교육혁신과, 전화 560-5893, 팩스 560-271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#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일부개정 규칙안

## 1. 개정이유

- 市 아동청소년과-10306(2019.07.05.)-청소년보호법 관련 지자체 조례·규칙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법률(청소년보호법)에서 위임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포상지급 대상에 대한 지급근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를 구체화하여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(제5조, 제6조, 제7조)
- 나. 종전에 상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문구를 개선하여 삭제하도록 함(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1) 「청소년 보호법」

#### 제49조(신고)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부서 공문 별도 시행(성별영향평가)

라. 기 타 : 특별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일부개정 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

제6조제1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자에게”를 “사람에게”로, “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”를 “이미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포상지급 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신고인에 대하여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 할 경우</u></p>	<p>제5조(포상지급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</u></p>
<p>제6조(지급)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,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지급 기준을 따른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지급) ①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환수)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<u>자에게</u>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<u>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</u>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.</p>	<p>제7조(환수) ----- ----- ----- <u>사람에게</u> ----- ----- <u>이미</u> ----- -----.</p>

# 의 건 수 렴 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 6. 기타 문제점		
<b>실·국(군·구)별 의견</b>			
협약개요	실·국별	제 출 의 건	검 토 내 용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- 983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일부개정규칙(안)

「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. 6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적용 기준의 근거를 현행화하여 감경 적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종전의 지침을 기반으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변경되지 않은 근거를 현행화하도록 함 (별표 2. \*)

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7

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 교육혁신과, 전화 560-5893, 팩스 560-271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(안)

#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일부개정 규칙안

## 1. 개정이유

-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적용 기준의 근거를 현행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의 지침을 기반으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변경되지 않은 근거를 현행화하도록 함 (별표 2. \*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1) 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

제44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제3항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기간,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 공문시행 예정(성별영향평가)

라. 기 타 : 특이사항 없음

##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일부개정 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[별표 2] 공통기준: 감경 50% 적용 (제2조 관련)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
2.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·부자 보호대상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국가유공자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
6. 만 65세 이상의 고령
7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
8. 희귀·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
9. 만 15세 미만 청소년(다만,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)
10. 위협, 폭행,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「청소년보호법」을 위반한 경우

\* 과징금 처분(감경처분 포함)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,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.(단, 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/100을 초과할 수 없음)

## 의 건 수 렴 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 6. 기타 문제점		
<b>실·국(군·구)별 의견</b>			
협약개요	실·국별	제 출 의 건	검 토 내 용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- 994호

## 도로구역(광역시도 3호선,광역시도 50호선) 결정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

광역시도(3호선, 50호선 사업명: 드림로~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)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(의제)에 관한 주민(토지 소유자)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6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도로구역 결정 내용

①구분	②종류	③노선 번호	④노선명	⑤위 치	⑥면적 (㎡)	⑦기점	⑧종점	⑨주요 경과지	⑩총연장 (km)
결정	광역시도	3		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원	31,968	서구 왕길동 56-6	서구 왕길동 64-441	-	전체 (28.676) 금회시행(0.75)
결정	광역시도	50	왕길~ 평동선	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원	3,575	서구 왕길동 56-6	서구 왕길동 56-6	-	전체 (12.2) 금회시행(0.02)

### 2. 도로구역 결정 사유

-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교통 혼잡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

## 3. 사업내용

- 사업명 : 드림로 ~ 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
- 사업위치 : 서구 왕길동 일원
- 사업규모 : L=770m, B=9.3m~64.0m (4차로)
- 사업기간 : 도로구역 결정일(실시계획 인가일) ~ 2024. 12. 31.

##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인천광역시청(종합건설본부장)
-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(미추홀구 한나루로 607)

##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※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·공고 참조)

##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- 열람기간: 2020. 6. 22. ~ 2020. 7. 10.
- 열람장소: 인천광역시청(도로과, ☎ 032-440-3793),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(토목부, ☎ 032-440-5212), 서구청(도시기반과, ☎ 032-560-4485)

## 8.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: 게재생략